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관할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설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임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나. 시장은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0. 1. 23.~2. 12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시립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”을 “시립장사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운영위탁)”을 “(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공시설물”을 “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시설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탁받은”을 각각 “위임 또는 위탁받은”으로, “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”를 “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거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장 <u>시립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</u></p> <p>제17조 (<u>운영위탁</u>) ①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(이하 "운영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<u>공공시설물의 관리</u>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<u>위탁받은 시설의 일부</u>를 다시 <u>위탁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18조 (<u>운영지원</u>)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<u>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</u>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장 <u>시립장사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</u></p> <p>제17조 (<u>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</u>) ①----- ----- <u>관</u> <u>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공</u> <u>공시설물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위임 또는 위탁받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임 또는 위탁받은</u> ----- ----- <u>위임 또는 위탁할</u> ----- -----.</p> <p>제18조 (<u>운영지원</u>) ----- ----- <u>위임</u> <u>받은 자치구청장이나 위탁받은 법</u> <u>인 또는 단체</u>----- 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(운영지원)제2항 개정에 따라 시 직영 장사시설을 자치구에 위임에 따른 위임비용의 발생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침부 사유

가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**

나. 추계결과 ≙ 2,250,000천원(연평균 450,000천원)

○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2,250,000천원으로 연평균 450,000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서울시 관내 장사시설 중 망우리묘지에 대하여 중량구로 위임시 묘지관리 사무위임에 따른 개장·이장 행정처리 및 편의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, 시설비 등 경비필요
- 망우리묘지의 경우, 이미 1973.5.27.에 만장되어 추가적인 분묘설치가 없으며, 묘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비조성묘지로서 매년 450,000천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됨
- 인건비(일반직 4인) 240백만원/ 시설보수비 및 경비 210백만원

○ 총 비용(합계) ≙ 2,250,000천원(연평균 45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 계
세입	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시립장사시설 자치구 위임 (조례안 제18조)	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2,250,000
	소계(b)	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2,250,000
□총 비용(a-b)		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2,250,000

4. 작성자

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천 관(2133-7433)